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

■ 제안사유

-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금호동 청사부지)의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관리계획내용

- 금호 및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창동 관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정부의 분동 기준인 인구 7만명을 금년말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 9월말 현재 서창동 인구수 : 67,519명
- 서창 본동 6,291명, 풍암동 24,191명, 금호동 37,037명】
- 특히 금호동 인구는 금년말에 39천 여 명에 달해 서창동 관내에서 금호동이 먼저 분동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100평 규모의 청사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 재산취득 승인 요청

-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330㎡(100평) 규모로 소요예산액은 약 1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소요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취득방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 금번에 취득하고자하는 공유재산은 금호지구 및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서창동 관내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정부의 분동기준인 인구 7만명이 금년말에 돌파 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 금호동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동청사를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 추진코자 함이므로 심사 후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